

의안 번호	2044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(수) 박경흠 의원 외 5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2. 7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15.(목)

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의 의정계 신설에 따른 직제·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제3조제3항): 의사계장→담당계장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

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직제·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· 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產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